

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민이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을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에 표준화한 주차구역 바닥표지 및 안내표시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(별표 1)를 부칙(안 제4조제4항)
 - [별표 1] 우선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
- 나. 별표 2,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 신설(안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)
 - [별표 2] 임산부 자동차 표지
 - [별지 제1호 서식]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(재발급) 신청서
 - [별지 제2호 서식]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·관리대장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1. 8. 13. ~ 2021. 9. 2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

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바닥 또는” 을 “별표 1에 따라 바닥과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임산부” 를 “별표 2의 임산부” 로, “신청서” 를 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리대장” 을 “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” 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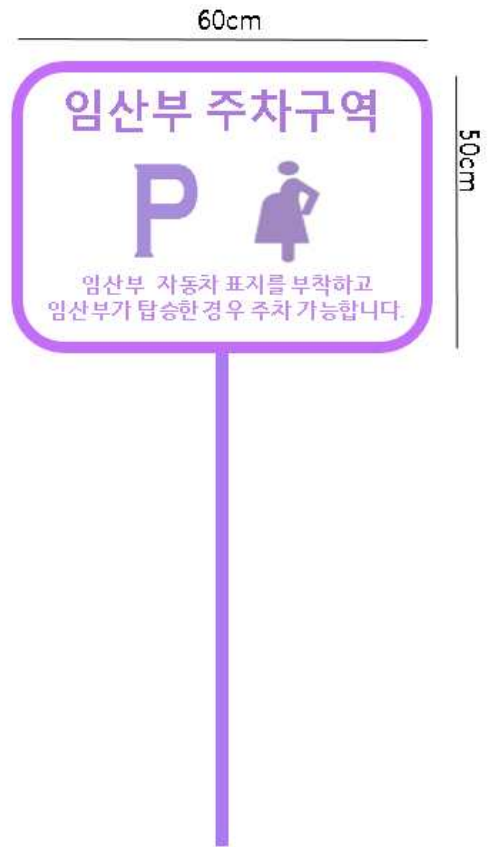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미사보건센터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미사보건센터장 박 은 숙
	팀장 직위 · 성명	모자보건팀장 이 새 라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이 새 라 (790-527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<u>바닥</u> 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임산부</u> 자동차 표지를 발급·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신청서</u>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모자보건법」 제8조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임산부 한 명당 한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<u>관리대장</u>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	<p>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<u>별표 1에 따라 바닥과</u>----- -----.</p> <p>제5조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별표 2의 임산부</u>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</u>----- -----.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</u>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1] 우선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 (제4조제4항 관련)



- 색 상 : CMYK 21/56/0/6(보라색계열)
- 규 격 : 주차장 환경에 맞게 설치

[별표 2] 임신부 자동차 표지 (제5조제2항 관련)



- 규 격 : 지름 8cm

[별지 제2호 서식]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·관리대장 (제5조제3항 관련)

표지번호	발급일자	임산부				표지발급 자동차		유효기간
	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주소	등록번호	차종/차명	

※ 표지번호 : 「연도표시 - 일련번호」를 적습니다(예, 0000-1).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1. 16.] [법률 제16257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